

## 해양오염에 관한 고찰(Ⅲ)

한국어선협회 기술개발부  
주임기술원 이 영 섭

### 1. 해양오염방지법

#### 다. 해양오염방지법 중 어선에 관련된 벌칙

지난호에는 어선에 관련된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을 살펴 보았다. 앞의 규정을 위반할 때 벌칙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, 경중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. 법을 준수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겠으며 이로 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.

벌칙은 해양오염방지법 제 8 장 법 제 49 조부터 제 55 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) 3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 만원 이하의 벌금 : 법 제 49 조 1 항

- 법 제 5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기름을 배출한 자, 즉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 금지로 총톤수 100 톤 이상의 어선에 해당된다.

- 법 제 10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자, 즉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

금지로 어선이나 일반선박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“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” 제 2 장제 4 조제 2 항에 의하면 “통상 탑승 인원 20 인 이하의 선박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”고 명시하고 있다. 일반적으로 어선에 적용되는 규정이 톤수 기준인데 반하여 이 규정은 승선원(선장, 기관장 및 어로작업원 등 모두를 포함)을 기준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, 연근해 어선으로는 채낚기어선이 가장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.

- 법 제 14 조의 5, 제 1 항 내지 제 3 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, 즉 해양오염방지장치의 검사대상선박이 해양오염방지증서,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행을 한 선박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해당되는 어선은 여러 불가피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배려가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불이익이 생기지

않도록 해야 한다.

- 법 제 15 조제 1 항을 위반한 자 : 어선에는 해당되지 않음.

- 법 제 17 조제 1 항을 위반한 자 : 어선에는 해당되지 않음.

- 법 제 22 조제 2 항을 위반한 자 : 어선에는 해당되지 않음.

- 법 제 27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, 즉 대량의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의 방제조치에 관한 것으로, 대량의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된 기름의 확산과 제거 및 계속되는 배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, 배출된 기름이 적재되어 있던 선박의 소유자 및 업무와 관련하여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로 되어 있다. 이 내용 중에는 어선원으로서 기름배출사고를 목격하게 된 경우는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,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. 물론 사고어

선의 선주나 사고 유발의 승선 원도 물론 해당된다.

2)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
- 법 제 5조제 1항인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금지를 과실로 인하여 위반하게 된 자

- 법 제 10조제 1항인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를 과실로 인하여 위반하게 된 자

- 법 제 15조제 1항을 위반한 자 : 어선에는 해당되지 않음.

3)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
- 법 제 43조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, 즉 "선박이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당국은 정선, 검색, 나포 등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"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.

4)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
- 법 제 6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, 즉 선박의 소유자가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선박에 기름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저폐수 배출방지장치, 물 벨러스트 배출방지장치, 분리 벨러스트 탱크, 화물창 원유세정설비 등, 해양오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된다.

- 법 제 11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: 어선에 해당

되지 않음.

- 법 제 14조의 7의 규정을 위반한 자, 즉 법 제 6조의 해양오염방지장치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장치의 교체, 개조 또는 수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수산청장 또는 항만청장의 명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다.

- 법 제 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: 어선에 해당되지 않음.

- 법 제 25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: 어선에 해당되지 않음.

- 법 제 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: 어선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,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"조정위원회"의 조정위원이 되었을 경우는, 분쟁조정 중에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법 제 46조의 2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: 어선에 관계되지 아니하나 설치코져 하는 해양오염방지장치, 자재 또는 약제가 합법적인 승인을 득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선박에 적재함으로써 비승인품으로 시정명령이나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.

5) 200만원 이하의 벌금

- 법 제 6조제 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, 즉 해양오염방지장치를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하고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된다.

- 법 제 6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자, 공동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선수 탱크와 총돌 격벽보다 앞쪽에 있는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선주는 선박의 초기설계시부터 당해 선박이 이 법에 저촉이 되는 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.

- 법 제 6조의 3의 규정을 위반한 자, 선박 내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것으로 선박 내 저장이나 처리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.

- 법 제 14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자, 즉 해양오염방지장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검사, 중간검사, 임시검사 및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한다. 초기 선박건조시 형식승인을 득한 검사품을 탑재하였더라도 이 검사들을 받아야 계속 항해가 가능하므로 항시 유의하여 시간적 제한이 강한 어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선주는 숙지하고 있거나 검사기관과 상의하여야 할 것이다.

- 법 제 20조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: 어선에 해당되지 않음.

- 법 제 2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: 어선에 해당되지 않음.

- 법 제 26조제 1항 1, 2호 해당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, 즉 배출된 기름이 적재되어 있던 선박의 선장이나 시설의 관리자 및 선박 또는 시설의 종사자가

아닌 자로서 기름의 배출원인 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신속 하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.

- 법 제 27조제 4 항 및 법 제 28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 한 자, 즉 기름을 방제하는 데 필히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인 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거나 비 치해야 한다.

6) 50 만원 이하의 벌금  
- 법 제 26조제 1 항 3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, 즉 기름이 해면에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한 자로서, 이는 상당히 적용상 애매하나 해양오염방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 민적 협조가 요구되는 만큼 위 법의 차원을 떠나 이러한 상황

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여 피 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.

- 법 제 38조제 2 항의 규 정을 위반한 자 : 어선과 관련 사항이 없으나 어선의 해체를 할 경우도 적용되므로 선박의 해체를 업으로 하는 자는 지켜 야 할 사항이다.

표 1.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

위 반 행 위	해 당 법 조 문	과 태 료 금 액
1. 법 제 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기록부를 비치·기록하지 아니한 자	법 제 53 조의 2 제 1 항제 1 호	60 만원
2. 법 제 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기록부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	" " "	50 "
3. 법 제 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	" " "	40 "
4. 법 제 1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 기록부를 비치·기록하지 아니한 자	" " 제 2 호	60 "
5. 법 제 1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기록 부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	" " "	50 "
6. 법 제 1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기록 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	" " "	40 "
7. 법 제 7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관리 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	" 제 2 항제 1 호	30 "
8. 법 제 7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비 치하지 아니한 자	" " "	20 "
9. 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	" " 제 2 호	30 "
10. 법 제 14조의 5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 염방지증서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	" " 제 3 호	" "
11. 법 제 16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 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	" " 제 4 호	" "
12. 법 제 16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 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	" " "	20 "
13. 법 제 19 조 또는 법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신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	" " 제 5 호	30 "
14. 법 제 20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처리대 장을 비치, 기록, 보존하지 아니한 자	" " 제 6 호	" "
15. 법 제 20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처리대 장을 허위로 기재한 자	" " "	20 "
16. 법 제 46 조의 4 의 규정에 의한 관계요원에 대 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	" " 제 7 조	" "

- 법 제 40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, 즉 정당한 이유 없이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, 보고지시 등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.

- 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, 즉 이는 법 제 40 조에 의한 기름 기록부사본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, 이에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응하여야 한다.

7) 과태료

-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: 법 제 8 조의 기름기록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및 법 제 14 조의 폐기물의 처리기록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로 과태료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.

-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 : 법 제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, 법 제 12 조, 법 제 14 조의 5 제 5 항, 법 제 16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, 법 제 19 조 또는 법 제 23 조, 법 제 20 조 제 3 항 및 법 제 46 조의 4 규정을 위반한 자에 저촉되는 것으로 앞의 표 1 과 같다. 표 1 의 내용은 법 제 53 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 46 조의 2 제 3 항에 관련된 내용이다.

라. 어선에 관련된 기타 사항

1) 부 칙

- 시행일 : 법은 1977 년 12 월 31 일에 처음 제정, 공포되어 1980 년 12 월 31 일에 1 차 개정 및 1986 년 12 월 31

일에 2 차 개정되어 1987 년 7 월 1 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 시행령은 1978 년 9 월 25 일에 제정되어 1982 년 9 월 15 일 1 차 개정, 1987 년 7 월 1 일 2 차 개정을 하여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었다. 시행규칙은 보건사회부령으로 1987 년 8 월 31 일에 처음 공포, 1988 년 5 월 25 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. 그러나 아직까지 공동부령(농수산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의 공동부령)은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동부령이 적용되는 조항들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. 그러나 선주는 법의 근본취지와 추이를 감안하여 해양오염방지법에 합당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.

- 해양오염방지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: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으로서 해양오염방지장치(중전의 선저폐수배출방지장치를 제외한다)를 설치해야 할 선박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 년내에 당해 해양오염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-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: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협약에 따라 교부한 국제기름오염방지 증서는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교부한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로 본다.

- 피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: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배출된 기름 또는 폐기물에 의한 해양의 오염으로 인한

피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새로이 법률이 제정,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-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자의 형식승인 및 검정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: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자의 형식승인 및 검정은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당해 해양오염방지장치, 자재 또는 약제에 대하여 행한 형식승인 및 검정으로 본다.

2) 폐기물

폐기물은 법 제 2 조 제 2 호에서 정하고 있는 "사람이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등으로서 원활한 해양이용을 저해하는 물질(기름을 제외한다)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"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.

- 특정폐기물 : 카드뮴 및 그 화합물, 수은 및 그 화합물, 유기할로젠화합물, 시안화합물, 유기인화합물, 납 및 그 화합물, 6 가크롬 및 그 화합물, 비소 및 그 화합물, 동 및 그 화합물, 아연 및 그 화합물, 유기실리콘화합물, 불화물, 기타 환경청장이 정하는 유해물질 등의 특정유해폐기물, 합성고무, 합성섬유, 합성피혁을 포함한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분자화합물, 특정유해폐기물을 함유하지 아니한 폐산 및 폐알카리를 말한다.

- 일반폐기물 : 폐지류, 폐목재류, 폐천연섬유 및 폐천연

고무류, 폐천연가죽류, 동물 및 식물성 고형물, 분뇨, 특정폐기물을 함유하지 아니한 오폐수 및 액상폐기물, 수송, 어로, 기타 선박의 통상활동에서 생기는 오수 등의 유기물류 폐기물과 금속편류, 유리편류, 도자기편류, 건축폐재류 등 비금속물질, 특정폐기물을 함유하지

아니한 광재, 연소재, 분진류, 수저토사류 및 폐각류 등의 무기물류 폐기물을 말한다.

3) 해양시설

법 제 2조 7 호의 해양시설은, 기름, 폐기물, 기타 물건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(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

되는 구조물 및 해역에 고정 설치된 부선을 포함한다),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구조물 및 해저광구에 설치된 구조물 등이다.

여기서 유의할 것은 각 업종별 수협이 보유하고 있거나 건조하는 유류보급부선이 적용대상이므로 적합한 조치를 취해

표 2. 선박내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 등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지정해역

폐기물	처리방법	처 리		방 법	
	지정해역	제 1	해 역	제 2	해 역
1. 폐지·폐목재류 등 가연성 일반폐기물		가. 작열감량 15% 이하의 상태로 하여 배출할 것 나. 비중 1.2 이상의 상태로 하여 배출할 것 다. 분말상태로 배출하지 말 것 라. 선박의 항행중(대수 속도 3 노트 이상의 속도로서 항행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배출할 것		가. 작열감량 15% 이하의 상태로 하여 배출할 것 나. 비중 1.2 이상의 상태로 하여 배출할 것 다. 선박의 항행 중에 배출할 것	
2. 유리편류, 건축폐재류 등 비가연성 일반폐기물		가.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배출할 것 나. 선박의 항행 중에 배출할 것		가.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배출할 것 나. 선박의 항행 중에 배출할 것	
3. 음식물 찌꺼기		가. 마쇄하여 배출할 것 나. 선박의 항행 중에 배출할 것		선박의 항행 중에 배출할 것	
4. 분 뇨		가. 분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마쇄장치 또는 분뇨처리장치로 처리하여 배출할 것 나. 수중에 깊이 배출할 것 다. 선박의 항행 중에 배출할 것		선박의 항행 중에 배출할 것	

주 : 1. 제 1 해역은 다음의 해역으로 한다.

- 가. 항만법에 의한 항만의 경계선으로부터 밖으로 1 만미터까지의 해역
- 나.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의 경계선으로부터 밖으로 1 만미터까지의 해역
- 다. 선박안전법시행령 제 2조 제 9 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과 그 경계선으로부터 1 만미터까지의 해역
- 라. 법 제 44 조의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안오염 특별관리해역의 경계선으로부터 밖으로 1 만미터까지의 해역
- 마. 위의 가, 나, 다, 라 외의 해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륙적 해도에 표시된 저조선으로부터 1 만미터 이내의 해역

2. 제 2 해역은 제 1 해역과 항만구역, 수산자원보전지구, 평수구역,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 한다.

야 한다.

4) 해역의 범위

법 제 3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해역은 영해법의 규정에 의한 영해 및 내수로 한다.

- 영해(領海) : 영해법 제 1 조(영해의 범위)에 “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(基線)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(外側) 12 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. 다만,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12 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”로 되어 있다.

- 내수(內水) : 영해법 제 3 조에 의하면 내수는 “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측(陸地側)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”로 되어 있다.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수와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.

5) 선박 내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지정해역

법 제 1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지정해역은 표 2 와 같으며, 통상 탑승인원 20 인 이하의 선박에 있어서는 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6) 비용부담의 범위

법 제 30 조 1 항에 의하면, 방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만으로 해양의 오염을 방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내무부장관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방제에 소요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 다만 천재, 지변, 전쟁, 사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(대통령령) 제 31 조에 의하면 비용부담의 범위는 :

- 방제조치로 인하여 멸실된 기구와 소비된 소모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

- 방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된 기구의 수리비, 다만 수리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의 경우에는 그 기구의 신품의 가액에서 현품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

-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구의 임차료와 세척에 소요된 비용

- 방제조치에 소요된 선박의 운항비, 인건비 및 기타 비용

- 방제조치를 위한 선박

의 예인, 기구 및 소모품 등의 운반, 배출 및 회수된 기름, 폐기물, 기타 물건의 제거,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된 비용

- 내무부장관은 상기 소요비용을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비용의 산출기초를 명시하여야 한다.

7) 분쟁의 조정

해역의 오염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는 내무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(법 제 30 조)

8) 선박을 버릴 수 있는 해역

법 제 38 조 단서각 규정에 의하여 선박을 버릴 수 있는 해역은 수심이 1,500 미터 이상인 해역으로 하나, 수산청장이 수산자원보호를 목적으로 해양환경보호 및 선박항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선박을 인공어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버리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이제까지는 국제해양오염방지규칙 및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. 차기호에는 해양오염방지기자재증 유수분리기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.

간첩신고 빠짐없이 국가안보 빈틈없이